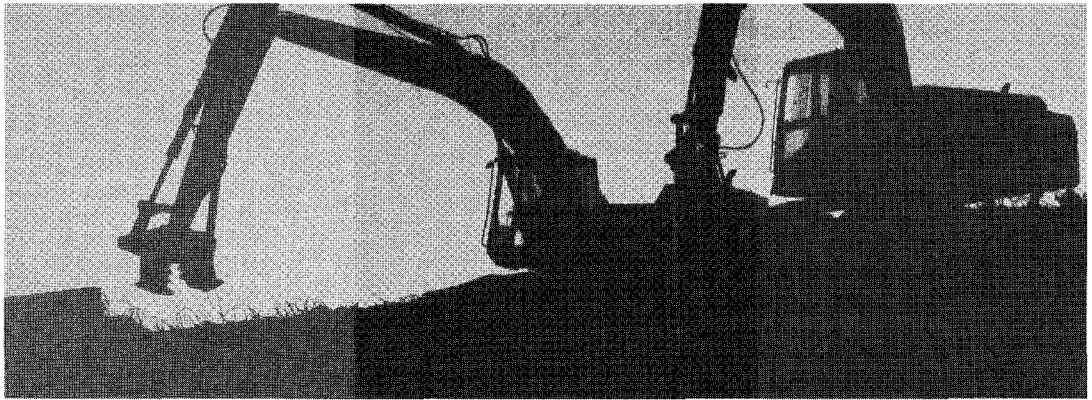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개정령 공포 · 시행

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기준 개선



건설교통부는 건설업자의 시공실적과 기술능력 강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기준(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지난 1월 15일에 공포하였다.

이는 기존 시공능력평가기준이 건설업체의 시공경험 및 기술능력 향상에 미흡하고, 일부 업체의 경우 경영평가액이 지나치게 과도하게 반영되는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개정령의 주요내용을 보면 실적 : 경영 : 기술의 가중치를 60% : 100% : 20%에서 75% : 90% : 25%로 조정함으로써 환산된 시평액 비중(실적 : 경영 : 기술)을 현행 39.1 : 41.2 : 15.5에서 45.6 : 33.5 : 17.0으로 조정하고, 경영평가액이 과도하게 반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영평가액이 실적평가액의 5배(조경, 산업 · 환경설비 및 전문 10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건설업체별 기술력 격차를 반영하기 위하여 보유기술자 등급에 따라 반영비중(1~1.5)을 차별화하고(특급기술자(기능장 포함) 1.5, 고급 1.3, 중급 1.15, 초급 1), 5년 이상 건설업을 영위한 업체의 경우 기간에 따라 공사실적의 1~3%를 신인도 항목에 반영하도록 하였다(5년~10년 미만(3년 평균실적 1%), 10년~20년(2%), 20년 이상(3%)).

또한 발주자에게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체 시공능력평가액과 함께 실적 · 경영 · 기술 등 각 항목별 사항 및 주요 공종별 실적도 공시한다.

건설교통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건설업체의 실적 및 기술력 향상을 유도함으로써 건설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강화하고, 발주자는 건설업체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활용하여 적정한 건설업자를 선정함으로써 부실시공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건설교통부는 현행 제도가 건설업자의 시공능력에 관한 모든 정보를 인위적 기준에 따라 금액화함으로써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앞으로 건설업자의 시공능력을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근본적인 개선방안도 아울러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 시공능력평가·공시제도

[1] 내용

건설업체의 시공능력을 화폐단위로 환산하여 건설교통부 장관(건설협회에 위탁)이 매년 평가·공시(자료제출(2.15, 재무제표 4.15 → 공시(7.31) → 활용(다음년도 공시일까지)하고, 발주자는 평가액을 기준으로 입찰제한을 할 수 있으며, 조달청 유자격자 명부제(群별 입찰제한) 등의 근거로 활용된다.

[2] 산정방식

평가액=실적평가액+경영평가액+기술능력±신인도평가액

① 공사실적평가액 = 최근 3년간 연평균 공사실적의 60%

② 경영평가액 = 실질자본금×경영평점

③ 기술능력평가액 = 기술능력생산액+퇴직공제불입금×10+최근 3년간 기술개발 투자액

④ 신인도평가액 = 신기술지정, 협력관계 평가, 부도, 영업정지, 재해율불량 등을 감안하여 가·감산

[3] 연도별 시공능력평가액 평균구성비율(%)

구 분	실적평가액	경영평가액	기술평가액	신인도평가액
2004년도	39.1	41.2	15.5	4.2
2003년도	42.4	38.4	14.5	4.7
2002년도	44.5	36.2	14.3	5.0
2001년도	48.7	30.8	15.3	5.2
2000년도	63.5	12.9	17.7	5.9
1999년도	66.0	11.5	19.0	3.5

※ 시공능력평가액 산정방식변경(2000년 개정, 2001년 시행)

■ 시공능력평가기준 주요 개정내용

[1] 평가항목별 반영비중 조정

건설업체의 시공경험 및 기술력 강화를 위하여 경영평가액 비중을 완화하고 실적 및 기술능력평가액 비중을 강화하되, 지나친 순위 변동에 따른 반발을 고려하여 실적 : 경영 : 기술의 가중치를 60% : 100% : 20%에서 75% : 90% : 25%로 조정하였다.

※ 전체 시공능력평가액 중 평가항목별 비중 변화

○ 개정 전(실적 : 경영 : 기술) = 42.4% : 38.4% : 14.5%

○ 개정 후(실적 : 경영 : 기술) = 45.6% : 33.5% : 17.0%

[2] 경영평가액 한도 설정

경영평가액이 공사실적평가액의 일정배수(일반 5배, 전문 10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한도를 설정하여 실적은 거의 없는 데도 자본금이 많아 경영평가액이 실적평가액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하게 평가되는 문제점을 시정하였다.

※ 신규업체 등 실적평가액이 등록기준상 최저자본금을 미달하는 경우에는 기준자본금의 일정배수(일반 5배, 전문 10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다.

[3] 일반건설업자의 영위기간 반영

5년 이상 건설업을 영위한 업체의 경우 그 기간에 따라 공사실적의 1~3%를 신인도 평가항목에 반영하여 장기간 일반건설업을 영위한 업체를 우대하고, 단계적 성장을 유도하기 위하여 건설업 영위기간을 신인도 평가에 반영하였다.

[4] 건설업자의 기술자 반영비중 차별화

특급기술자(기능장 포함)는 1.5, 고급기술자는 1.3, 중급기술자는 1.15, 초급기술자는 1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건설업체별 기술력 격차를 반영하고, 기술자격자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자 등급별 반영비중을 차별화하였다. 그 밖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능사, 인정기능사 등은 1가중치를 부여하였다.

[5] 시공능력평가 공시항목 다양화

발주자에게 건설업체의 시공능력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현재 공시하고 있는 시공능력평가액 및 업종별·전문분야별 실적과 함께 항목별 평가액과 주요 공종별 실적도 함께 공시한다.

〈현행〉 시평액+업종별·전문분야별 공사실적+보유기술자수

〈개정〉 종전 공시항목+4개 항목별 평가액+주요 공종별 실적